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2011.12.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
- 기금용도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안 제4조제8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안 제10조제5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 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8조에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현행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 함.
 - 안 제4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법 제71조제3항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1호부터 10호까지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 주고 제8호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
 - 안 제10조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함.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 줌으로서 국민들이 해당 조문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한눈에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주변 업소의 위생향상을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 자원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 한 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 지며
-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5 호
----------	--------

제출연월일 : 2011.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모법이 개정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안 제10조제5항)
- 다. 기금용도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학교주변 소규모업소의 위생향상에 기여.(안 제4조제8호)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으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을 ““시설개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으로 “모범음식점에 한하여”를 “모범음식점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하”라 함은”을 ““대하”란”으로 하고, “기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제4호 중 “기타 영”을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각호의 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식품위생담당 주사”를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을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앞의 “제4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를 삭제한다.

제 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 할”로 한다.

제 15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 1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 1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금융기관간”을 “금융기관 간”으로 한다.

제 19조 앞의 “제5장 삭제”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의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 칙</u>	<u><삭 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u> ----- ----- ----- ----- 규정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1 조제 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 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부터 제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 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	3. “시설개선자금”이란 -----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3. (생략)

4. 기타 열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만 -----

-----.

5. “대하”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삭 제〉

제3조(기금의 조성) ----- 각 호 -----.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 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각 호 -----.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용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생략)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8.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 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
용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영 제
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
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2. (생 략)

②、③ (생 략)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
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
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의 예에 의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
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2. (생 략)

③----- 따라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 영 제
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
-----.

1. ----- 위생과장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따르다.

<삭 제>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
과 같음)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

----- 각 호의 사람으로 ---.

1.、2.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당
당 주사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7.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
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
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3조(회의) ① (생략)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

④ -----
----- 1명----- 식품위생
담당주사-----.

⑤----- 하며, 한 차
레만 ----- .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

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4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
----- 따라 -----

----- 시행할 -----

-----.

제15조(융자대상) -----

-----,
----- 그 밖에 -----

제1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
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대하
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
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
한 사항은 영등포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5장 삭제

제6장 보 칙

-----.

③----- 따라

----- 따라 -----

-----.

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 금융기관 간-

-----.

<삭 제>

<삭 제>